

본 【도시가스 공급 안내 및 상호 협약서】는 공급신청서의 첨부서류로써, 당사의 공급검토 절차를 거쳐 공급신청을 의뢰한 고객으로부터 시설분담금 등의 제반 금액이 납부될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에 따라 제출하신 공급신청서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계약서』로 간주되며, 법적효력을 갖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목적)

본 【도시가스 공급 안내 및 상호 협약서】는 ㈜부산도시가스(이하 “공급자”라 함)와 고객(이하 “수요자”라 함)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가스요금, 안전관리 등 가스공급과 관련된 제반 기준 및 규정을 안내하고, “수요자”는 이에 동의함으로써 상호 협약을 토대로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가스공급 확정 시, 본 협약서를 『도시가스 공급계약서』로 활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가스 공급조건)

① 공 급 장 소	(부산시)	(구/군)	(읍/면/동)	(리)	(번지)
② 사 용 용 도	☐ 취사전용		☐ 개별난방		③ 건물명
④ 주 택 유 형	단독 (☐ 단독, ☐ 다가구, ☐ 다중주택)			공동 (☐ 연립, ☐ 다세대, ☐ 기숙사)	
⑤ 계 량 기 등 급	(등급)		⑥ 세 대 수	(세대)	

제3조 (계약의 성립)

공급규정 제6조에 의거, “수요자”가 공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공급자”의 검토를 거쳐 본 계약의 제4조 및 공급규정에서 규정한 제반 납부금액(시설분담금, 공사부담금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납하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갈음한다.

제4조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납부)

① “수요자”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 2, 공급규정 제6조 및 제14조 ②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제 분담금(부가세 별도)을 공급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요자”는 공급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 시설분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의뢰한 주택까지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가 100M당 20세대 미만인 경우,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취사만 하는 경우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이 별도 부과된다. 2. 또한, 인입배관 공사비는 공급규정 제14조 ②항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단, 공사비는 회사에서 정부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공급규정 제4조 제19항에서 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까지로 한다. ② “수요자”는 본 계약 제2조의 계량기등급 또는 계약용량이 증설되는 경우, 증설분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공급자”에게 추가 납부한다.

※ 시설분담금 산출기준 (근거 : 부산시 고시 2008-254호,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 2항 및 별표2)

구분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
납부대상	전체 가스사용자	취사전용 가스사용자	100M당 77㎡/h 미만인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기준단가(원/㎡) × 표준가스소비량(㎡)	기준단가(원/㎡) × 표준가스소비량(㎡)	기준단가(원/㎡) × 표준가스소비량(㎡)
기준단가	22,169(원/㎡)	110,017(원/㎡) (1세대당 최대부담액 : 176,020원)	[(표준투자비 × 배관연장 × 적용률) - (시설분담금 회수액 +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표준가스소비량

제5조 (도시가스 공급검토 및 공급개시)

① “공급자”의 공급검토 과정에서 “수요자”의 공급요청 구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공급자”는 공급의무 및 가스공급시설 설치의무를 지지 않는다. 1.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 2에 의거, 가스공급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지역으로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이 가스공급시설 끝 부분의 배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끝 부분의 배관에서 측정된 도시가스 압력이 1Kpa부터 2.5Kpa 까지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 2.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도로의 확장·포장이 계획된 경우, 지역 재개발이 추진예정인 경우 및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이 완료되면 쌍방협의에 의하여 가스공급을 개시한다. 단, 굴착허가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인허가 지연 등의 “공급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스공급이 지연되는 경우, “공급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 본 계약 제4조의 제 분담금이 납부 완료되어야 한다. 2. “수요자” 소유의 도시가스 시설공사가 완료되고, 공급자의 공급 전 안전점검이 완료되어 도시가스 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③ “수요자”의 사정에 의해 보일러 시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 및 가스사용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제6조 (검침 및 사용량 산정)

① 검침일은 매월 “공급자”의 지정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취사용은 격월로 할 수 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5조 ②항에 의한 경우는 별도 검침을 실시한다. ②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7조에 따라 “공급자”는 “수요자”의 가스계량기 검침에 의하여 “수요자”의 해당월 사용량을 결정한다. 이 때, 공급규정 제13조의 2에 따라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온압보정장치에서 산출된 보정값으로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한다. 단, 고장 등으로 보정장치의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는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7조에 따라 사용량을 결정한다. 만약, 공급규정 제27조 ③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수요자” 중 별도의 보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고시하는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한 산정식에 의해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한다(사용량=검침량×온압보정계수). ③ “수요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가스사용량이 계량되지 않을 경우 전년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전월사용량 또는 월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 (요금의 적용 및 납부)

① 사용량에 대한 요금납부는 매월 “공급자”의 지정일에 “공급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만약 지정일(납부 마감일)까지 가스요금이 미납된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8조 ②항의 가산금(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한 월 2%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연간 3회까지)을 미납원금에 부과한다. ② “공급자”는 요금 고지서를 요금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고지한다. ③ 도시가스 요금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요금 제도 및 고지가격을 기준으로 본 계약 제2조 ②항의 사용용도별 요금단가를 적용하며, 관계기관의 가스요금 고지가격 변동이 있을 시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8조 ②항에 따라 변동가격 적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요금에 반영한다.

제8조 (“공급자”의 안정공급 의무)

“공급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수요자”에게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9조 (“수요자”의 준수 의무)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 경매 등의 사유로 “수요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요자”는 변경 발생 7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공급자”에게 “수요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이전 “수요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요자”가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로부터 실제변경 기준일까지의 요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가스요금이 비정상적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스공급의 중지 또는 제한)

①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수요자”가 가스요금 및 그 밖의 공급규정에 의한 제반 금액(시설분담금, 공사부담금, 보증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발송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검침, 점검, 작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4.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한 때. 5. “공급자” 소유의 시설을 고의로 손상하여 손해에 입혔을 때. 6. “수요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7. 법 제26조에 의한 시설개신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가스사용 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공급자”의 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른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9.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상황 및 굴착공사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10.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11. 가스공급시설의 수리, 변경, 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12.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 지시가 있을 때. 13. 보안 및 안전상 부득이할 때. 14.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제한 및 중지 ② 제 ①항에 의한 가스공급의 중지나 제한 시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본 조항에 의한 가스공급 중지 및 제한의 결과 “수요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급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계약위반에 따른 피해배상(보상))

① “공급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 제8조를 위반하여 “수요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수요자”는 자신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한 손해를 “공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의 징수)

①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8조에 따라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징수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 교체비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2. 봉인파손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3배, 3. 당사의 승인없이 무단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4. 계량기이전배관 불법 연결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5. 계량기 무단이설 : 전년 동월사용료의 3배, 6. 부정시공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단, 전년 동월사용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사용료를 월 사용료로 하여 적용하며, 전년 동월 및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가스연소기의 총 최대 가스 소비량에 의거 산정한다.

제13조 (시설의 안전관리 및 책임)

① “공급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및 안전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② “수요자”는 공급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가스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풍관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수요자”가 가스누출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퓨즈를 잠그고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장소의 출입 승인)

① “수요자”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지정된 자가 “수요자”의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검침, 점검, 조사, 가스사용 제한, 공급중지 등을 목적으로 출입 시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이 때 “수요자”가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을 요청할 경우, 출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5조 (공사시행, 시설의 유지관리 및 계량기 관리비용)
①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 경계선 내의 "수요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 등의 토지 경계선 내의 "수요자" 소유 공급시설 및 가스 수요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③ "수요자"는 가스계량기의 유지, 보수, 고장 시의 교체 등을 위한 관리비용을 공급규정 제13조 ③항 및 별표 4에 의거,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설치된 가스계량기의 계량기 관리비용은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스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도래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는 "공급자"가 실시하고, 계량기 관리비용은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3조 3항에 의거, 매월 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하여 "수요자"에게 부과한다. ⑤ 가정용 계량기 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한 계량기(다기능 가스안전 계량기 등)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러한 특수한 계량기에 대해 공급규정 제13조 ③항에 의거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설치, 교체 등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6조 (해약)
① "수요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에정일 3일 이전에 그 일자를 "공급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폐지에정일에 폐지하고, 그 폐지일을 해약일로 한다. "공급자"가 그 폐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② "수요자"가 "공급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폐지한 경우는 "공급자"가 가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③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9조 ①항에 의한 사유로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요자"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④ "공급자"는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약일 10일 전까지 고객에게 납부를 최고한 후 공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제16조에서 정하는 해약일까지로 한다.

제18조 (기타)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조에 의거 소제기 상대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공급규정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변경 합의서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관련법규 및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는 본 계약관련 조항의 변경 없이도 개정 내용에 준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공급규정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고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작성일 :	(년)	(월)	(일)
"공급자"	"수요자"		
• 주소 :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545번지 • 상호 :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 - 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	• 주소 (고지서 수령) : • 전화번호 : • 수요자 [사업자 번호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이용목적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식별 정보") •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정보") • 사용량, 사용금액, 결제기록, 접속기록, 공급증지기록 ("서비스 이용정보")	• 서비스 가입·심사(신용평가 / 신용정보 조회)·처리 및 서비스 제공업무 및 부대업무 이행·보조 • 서비스 신청내용 변경 및 서비스 계약 해지 접수·처리 • 서비스 개통 / 장애처리, 품질개선 활동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해피콜 등), 경품추첨 및 배송 • 민원처리, 서비스이용 고충 확인·점검, 서비스 관련 고지사항 전달 • 이용요금 및 위탁수수료의 정산 및 요금 청구·고지·결제 및 추심 • 홈페이지(www.pusangas.co.kr)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고지되어 있는 수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위탁 • 본인 확인 및 신용정보 조회, 요금청구 및 요금관련 업무, 기타 고객과의 의사전달 경로 • 연체정보 제공 및 채권추심을 위한 정보 제공 (연체 발생 시에 한함)
• 이용기간 : 사용 신청일 ~ 해약일 • 보유기간 : 요금정산, 오납 등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해지 후 5년간. 요금정산이 미완료된 경우 해결 완료일부터 5년까지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급위탁의 수탁자, 수탁업무, 제공되는 개인정보, 기타 서비스 제공, 연체정보 제공, 채권추심 등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급위탁의 자세한 내역은 www.pusangas.co.kr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게시합니다.	

고객 (수요자) 및 예금주는 위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며, "공급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제반법률에 따라 고객 (수요자) 및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 등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 계약의 서비스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고객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행위는 없음을 보증합니다. 고객 및 예금주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일	년 월 일	고객명	(인 / 서명)